

집합투자기구 정정

- 대상투자신탁 : 현대튼튼대한민국증권자투자신탁1호[주식]
- 대상서류 : 간이투자설명서, 투자설명서, 집합투자규약
- 변경내용 : 종류C-P, 종류C-Pe(연금저축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온라인 판매전용 클래스),
종류C-P2, 종류C-P2e(퇴직연금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온라인판매 전용 클래스),
종류S-P(펀드슈퍼마켓 연금저축계좌 클래스) 신설 및 환매수수료 삭제
- 효력발생일 : 2018.05.28(월)
- 변경대비표(간이투자설명서)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I. 집합투자기구 개요			
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	<u><삭제></u>
보수 *주석사항	종류S-P,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 신설	(주2)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-f, 종류C-i, 종류C-w, 종류B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(주2)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-f, 종류C-i, 종류C-w, 종류B,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, 종류S-P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[1]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	-	<u>작성기준일:2018.05.14</u>
[1] 투자전략 4. 투자실적 추이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-	■ 연도별 수익률 추이 <u>작성기준일:2018.05.14</u>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			
1. 과세	종류S-P,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 신설	-	<p>■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: <u>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(연금 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과세하며, 관련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 <p>■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<u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u></p>

- 변경대비표(투자설명서)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-----	------	-------	-------

<요약정보> I. 집합투자기구 개요			
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	<삭제>
보수 *주석사항	종류S-P,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 신설	(주2)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-f, 종류C-g, 종류C-w, 종류B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(주2)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-f, 종류C-g, 종류C-w, 종류B,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, 종류S-P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요약정보> 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[1]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	-	작성기준일:2018.05.14
[1] 투자전략 4. 투자실적 추이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-	■ 연도별 수익률 추이 작성기준일:2018.05.14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			
1. 과세	종류S-P,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 신설	-	<p>■연금저축계좌의 세제 :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<u>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(연금 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과세하며, 관련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 <p>■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<u>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u></p>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S-P,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 신설	<신설>	<종류S-P> <u>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C9970</u> <종류C-P> <u>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C9971</u> <종류C-Pe> <u>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C9972</u> <종류C-P2> <u>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C9973</u> <종류C-P2e> <u>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C9974</u>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S-P,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 신설	<신설>	<u><종류S-P></u> <u>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C9970</u> <u><종류C-P></u> <u>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C9971</u> <u><종류C-Pe></u> <u>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C9972</u> <u><종류C-P2></u> <u>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C9973</u> <u><종류C-P2e></u> <u>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: C9974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	-	작성기준일:2018.05.14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의 구조	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 종류S-P 신설	<신설>	<u><종류S-P ></u> - 펀드코드 : C9970 - 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,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<u><종류C-P></u> - 펀드코드 : C9971 - 가입자격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<u><종류C-Pe></u> - 펀드코드 : C9972 - 가입자격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투자자 전용이며,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<u><종류C-P2></u> - 펀드코드 : C9973 - 가입자격 : 근로자퇴직급여

			<p>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 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<u><종류C-P2e></u> - 펀드코드 : C9974 - 가입자격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 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가입하는 온라인(On-Line) 판매 전용 수익증권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종류별 가입자격</p>	<p>종류S-P,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 신설</p>	<p><u><신설></u></p>	<p><u><종류S-P></u> - 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,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<u><종류C-P></u> - 가입자격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<u><종류C-Pe></u> - 가입자격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투자자 전용이며,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<u><종류C-P2></u> - 가입자격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 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<u><종류C-P2e></u> - 가입자격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 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가입하는 온라인(On-Line) 판매 전용 수익증권</p>
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나. 환매 (4) 환매수수료</p>	<p>환매수수료 삭제</p>	<p>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	<p>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.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종류S-P,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C-P2, 종류C-P2e 신설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u><신설></u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<신설></u>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 <p><u><종류S-P>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,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</u> - 환매수수료 : 없음 <p><u><종류C-P>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</u> - 환매수수료 : 없음 <p><u><종류C-Pe>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투자자 전용</u> - 환매수수료 : 없음 <p><u><종류C-P2>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</u> - 환매수수료 : 없음 <p><u><종류C-P2e>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가입하는 온라인(On-Line) 판매 전용</u> - 환매수수료 : 없음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<u><종류(클래스) S-P>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집합투자업자보수 : 0.67 (%)</u> - <u>판매회사보수 : 0.24(%)</u>
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탁회사보수 : 0.03(%) -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0.02(%) <종류(클래스) C-P>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67 (%) - 판매회사보수 : 0.80(%) - 신탁회사보수 : 0.03(%) -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0.02(%) <종류(클래스) C-Pe>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67 (%) - 판매회사보수 : 0.40(%) - 신탁회사보수 : 0.03(%) -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0.02(%) <종류(클래스) C-P2>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67 (%) - 판매회사보수 : 0.76(%) - 신탁회사보수 : 0.03(%) -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0.02(%) <종류(클래스) C-P2e>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67 (%) - 판매회사보수 : 0.38(%) - 신탁회사보수 : 0.03(%) -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0.02(%)
--	--	--	---
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	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 작성기준일:2018.05.14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라. 운용자산 규모	라. 운용자산 규모 작성기준일:2018.05.14

변경대비표(집합투자규약)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3. <생략> 14. <신설>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3. <현행과 같음> 14. <u>종류S-P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,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 15. <u>종류C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</u>

	<p>16. <신설></p> <p>17. <신설></p> <p>18. <신설></p>	<p><u>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16. <u>종류C-Pe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(On-Line) 판매전용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17. <u>종류C-P2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</u></p> <p>18. <u>종류C-P2e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가입하는 온라인(On-Line) 판매전용 수익증권</u>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</p> <p>1. ~ 13. <생략></p> <p>14. <신설></p> <p>15. <신설></p> <p>16. <신설></p> <p>17. <신설></p> <p>18. <신설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</p> <p>1. ~ 13. <현행과 같음></p> <p>14. <u>종류S-P 수익증권</u></p> <p>15. <u>종류C-P 수익증권</u></p> <p>16. <u>종류C-Pe 수익증권</u></p> <p>17. <u>종류C-P2 수익증권</u></p> <p>18. <u>종류C-P2e 수익증권</u></p>
<p>제39조(보수)</p>	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 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 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<u>(종류S-P 수익증권)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7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4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</p> <p><u>(종류C-P 수익증권)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7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8.0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</p> <p><u>(종류C-Pe 수익증권)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7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</p>

		<p>(종류C-P2 수익증권)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7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6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p> <p>(종류C-P2e 수익증권)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7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8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p>
제41조(환매수수료)	<p>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 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“이익금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<삭제></p>
부 칙		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/p>

□ 기 타 : 정정 후 원본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